

외식산업진흥법 시행에 즈음하여

오승용

한국식품연구원 안전유통연구단

외식산업진흥법이 2011년 3월 9일 제정되고 외식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령안이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서 9월 10일부터 외식산업진흥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2007년 12월 27일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 정책들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었지만, 식품산업진흥법이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서 개별 식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육성·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외식관련 종사자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외식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9년 10월에 외식산업진흥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그 후 약 1년 4개월 동안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비로소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외식산업의 진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외식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책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외식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연수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외식상품의 제조 및 관리기술 개발 추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외식상품의 품질향상 및 국제표준 확보를 위한 외식상품 표준화 추진, 외식산업 통계 작성 등 외식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농어업 생산자와 농수산물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과의 연계강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외식상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체, 단체급식업체 및 농산물 전처리업체 등이 우수 식재료를 구매, 판매 및 단체급식에 제공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과 외식산업의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고 외식사업자의 시설, 서비스 및 품질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 외식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외식문화의 선진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외식업체의 환경 및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외식업계의 오랜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외식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

련되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정부에서는 외식산업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식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식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외식업계에서는 업체 종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의식전환을 통한 자구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와 업계의 노력들이 어우러질 경우 외식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과의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